

학생인권 자치 생활규정 도움 자료 하나!

2004년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 이 자료는 2004년 전교조 경남지부 학생생활국이 주관하고 전교조 경남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가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대토론회 - “입시위주 · 권위주의 문화 속의 학생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자료입니다.

● 비인간적 입시구조와 반인권적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학생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제약받고 있는 지, 학생선도(징계)규정,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체벌 규정 등 현행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현실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 례

들어가며	…2	학교의 하루
하나.	…3	성적순과 선서
둘.	…5	학칙(학교규칙)
셋.	…5	1. 학생선도규정 2. 학생선도규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넷.	…12	1.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다섯.	…14	1. 학생 체벌규정
여섯.	…17	1. 학생생활수칙
일곱.	…19	

마치면서 ...21

덧붙임 ...23

1.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2.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통보 요약문

입시교육, 권위주의 문화 속의 학생인권

-2004년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2004.10)

들어가며

지난 2001. 10 .22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표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는 캠페인 결과 보고서 (‘전국 244개 중, 고등학교 교칙분석’ 이하 ‘인권사랑’)를 낸 지 3년이 지났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2001. 11)가 만들어지고 작년 NEIS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이 인권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그 어느 곳보다 목표가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는 교문과 현관 앞엔 여전히 공통된 글들(‘미래인, 창의적 인간, 민주시민의 육성 등’)이 붙어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교마다 교육목표는 더욱 거창하다.

그러나 다원화, 지구촌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 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주입식, 지식 중심의 입시교육에 머물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며,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초미의 관심은 입시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 어떤 교육철학, 교육목표의 빛나는 별들도 입시교육의 거대한 블랙홀 속에 초라하게 사라질 뿐이다.** 교육주체 모두가 내 자식, 내 제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변화를 갈망한다. 개인으로서, 몇몇 학교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개성과 인권은 성적을 통한 대학진학이라는 외길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구조적이고 열악한 현실 속에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할 대다수의 담임과 학생부장, 학교장은 말한다. “학생인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입시교육의 현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사치스런 생각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알면서도 무관심한 학생들, 교사보다 더 교육적 관심과 철학이 높은 학부모, 나아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알면서도 동네북처럼 그때마다 두들기는 언론의 관심 방향도 문제를 회피하기는 그러하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교사와 학교는 책임이 줄어들거나 피해갈 수는 없다. 교사이기 전에 학부모이며, 사회 구성원의 선배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오늘날 더 이상 미래의 인격체가 아니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여러 규칙과 규정, 사회 구성원의 합의 없이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그때마다 만들어진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인권의 틀 속에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전 사례 연구인 '2001 인권운동사랑방 보고서'의 도움을 받았다. 2004년 경남(마산, 창원)지역 인문고에 나타난 각 학교의 학칙, 학생회 회칙, 학생선도규정, 학생체벌규정, 학생생활수칙을 분석한 결과 각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지역은 2001년 이후 여러 번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남지역에 비해 부분적으로 학생선도규정이 개선된 점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문화되다시피 한 몇몇 규정을 바꾸거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권리마저 학교울타리 안에서 왜곡되는 현상들이 존재하는 한 학생인권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중학교도 거의 같은 형식과 내용들이었으며,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에 오니 좀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다."고 말한다.

인용된 분석자료는 2004년 1학기 내 각 학교에 나타난 여러 규칙, 규정, 수칙들로써 현재와 조금 다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최근 자료를 인용했음도 밝혀둔다.

학교의 하루

인문고등학교에서 아침에 교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학생부 선생님과 선도부 학생들일 것이다. 근엄한 얼굴 표정, 딱딱한 자세, 예리한 눈매, 손에 든 두터운 흑표지 사이에 줄에 달린 채 끼여 있는 볼펜 한 자루가 첫 풍경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장 한 쪽에는 두발,복장 위반, 지각 등으로 지적당한 학생들이 불만과 부끄러움에 찬 얼굴로 벌을 받거나 훈계를 듣고 선도부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조하여 지적 해당 학생들을 가려내거나 흑표지를 들추어 기록하기에 바쁘다.

1교시 시작 전 담임의 전달 말씀-월요일 외는 대부분 출석 확인 및 청소, 일과, 생활지도 등-을 듣고 50분 수업에 쉬는시간 10분이란 빈틈없는 쳇바퀴가 굴러간다. 이들에게 자유시간은 점심, 저녁시간과 청소시간뿐이며, 친구들과 매정 같 때가 그나마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평일 일과(근무 시간 17:00) 후에 교문을 들어서면 선생님과 선도부와 흑표지가 없다. 아침과는 너무도 달리 아이들은 집에 가지도 않고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교문 밖 출입이 자유롭고 복장도 신발도 제각각이다. 아침부터 일과 시간까지 엄격히 적용되었던 교문출입 및 분위기는 해방된 공간 같다.

교실엔 어둠을 내쫓으려 하나 둘 형광등이 켜지고 신호 음악이 울리면 책걸상 소리로 교실은 부산하다. 학생, 교사들은 '야간자율학습'이 '타율 혹은 강제 학습'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나 용어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은 별로 없다. 담당(담임) 교사가 들어와 야간자율학습자 출석 확인(?)을 한다. 수시로 복도에는 담임, 학년 부장이 지나가고 가끔씩 교감이나 학교장이 또 지나간다. 교실에만 불이 켜지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학년 교무실엔 절반 정도의 담임이 있어 아이들과 상담하고 학부모와 전화를 하고 있다. 불이 켜진 것은 교장실도 예외가 아니다. 밤 10시를 넘어서야 불이 꺼지고 옥자지껄한 교문 앞에 줄지은 것은 학원 승합차와 승용차들이 삼삼오오 아이들을 태우고 사라진다. 그래도 한 두 교실은 12시까지 불 켜진 곳도 있으며, 몇몇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시작된다.

하나.

1. 성적순과 선서

입학식은 모두가 축하받아야 날이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월 중 행한 신입생 반편성고사 최고 득점자에게 입학선서의 기회가 주어진다. 입학식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그 학생을 쳐다보며 수군거린다. 미리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고 일찍 등교해 교무실에서 몇 번이나 연습을 한 대표 입학생은 또렷한 목소리로 외친다. "선서! ○○○외 ○○○명은 교칙을 준수하고... 바랍니다." 이어서 입학허가 선언이 있고 고등학생의 자격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교장 훈화, 처음부터 군기를 잡아야 한다(?)는 학생부장의 근엄한 목소리가 일사불란한 행동

을 요구하기도 한다. 담임과 교실을 배정받아 학급의 일원이 되면 약 한달 정도 중학생의 탈을 벗고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대안

입학 첫날부터 한 학생을 뺀 모두를 성적으로 기죽이는, 1등의 경쟁자를 확인시켜주고 무언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입학 문화가 언제쯤 달라질까? 장애를 딛고 입학한 학생이나 연장자에게 선서의 기회를 주어서 불편하지만, 늦었지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입학식이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선서’는 사회의 법 준수와 같이 입학생 모두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켜야 할 학칙(교칙)이하 모든 학교규정, 생활수칙을 지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입학생,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사전에 전달 받고 읽어본 일이 없다. 관심이 있다면 요즈음 **일부 학교 홈페이지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학생은 입학 전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앞서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회조차 가지기 힘들다.**

학교 선택은 본인 결정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더라도 대한민국 교교에 적용되는 **학칙, 선도규정, 학생회 회칙, 체벌규정(벌점규정), 학생생활수칙** 등이 같지 않다. 학칙은 대동소이하나 징계 조항을 담고 있는 학생선도규정은 조항과 적용 기준에 있어 차이가 나며, 학생회 회칙, 학생생활수칙은 더하다.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자신이 지키고 보호받아야 할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비밀스런 것도 아니고 간단한 내용만 알릴 것도 아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도 함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학칙과 규정, 수칙들이 적용기준까지 자세히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야 내용을 볼 수 있는 학교 (-)

교칙 공개(유○, 무×)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선도규정 (유○, 무×, 적용기준까지 공개한 학교●)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회회칙 (유○, 무×, 선거규정까지 공개한 학교●)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거규정은 있으나, 학생회회칙이 없는 학교도 있음

학생체벌규정(벌점기준) (유○, 무×, 적용기준까지 공개한 학교●)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둘.

학칙(학교규칙)

학칙은 학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그 중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은 학생에게 직접 적용되는 중요한 조항이다. 특히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퇴학'은 매우 중요해서 조건을 상세히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교육인적자원부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0호 교육인적자원부]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그러나 학칙에 나타난 퇴학의 기준이 더 많이 규정된 사례도 있다. 퇴학의 기준은 학생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31조 퇴학처분 조항은 용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가 넓으며, 선도규정에 나타난 퇴학의 기준 또한 봉사활동에서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한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

사문화 되다시피 한 퇴학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의 적용범위 또한 한정해야 한다.

셋.

1. 학생선도규정

학교 업무 중 학생부장 업무는 3D업종이라 별칭한다. 교육청으로부터 무수히 남발되는 공문서 작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와 담임이 감당 못하겠다는 특별한 학생, 일사불란과 무사안전을 위해 포도대장에 준하는 임무를 요구하는 학교장(감)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학생부 교사들은

반복되는 아침교문지도, 교내외금연지도, 행사 후 교외지도, 방학 중 교외지도, 학생회 운영 등 많은 업무로 인해 하나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것이 학생부 업무의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학생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경찰서, 파출소 출입이 잦아지고 피해, 가해 학부모로부터 험빠지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학생의 징계과정에서 자칫 빠뜨리기 쉽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개인성은 늘 존재하므로 학생부장과 학생부 징계(상벌)담당교사는 이 규정을 갖고 항상 생활해야 한다.

학생선도규정(징계규정), 체벌규정, 학생생활수칙은 구체적이며 강제성을 띠고 있기에 학생인권을 살피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름과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하듯이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학칙, 여러 규정과 수칙(이하 규칙)은 한 곳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 주체인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단체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학생선도규정은 오래전 교육부(도교육청)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징계기준, 적용, 기간 등이 비슷한 것은 이웃 학교 간 형평성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문제제기를 염려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가 넓어 학생선도위원회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학교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다음 밑줄 친 부분은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다른 것이다. 봉사활동에서 퇴학까지 징계까지 가능한 것만 표시했다. 징계 영역이 너무 넓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엄벌함으로써 학교 명예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봉사활동에서 퇴학처분까지 처벌 가능한 기준

교사를 모독한 학생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학교의 비품 및 시설을 고의로 절취 또는 반출한 학생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 of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외부의 불순 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학생 /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 반국가적 행동을 한 학생 등

1-2. 봉사활동에서 특별교육이수까지 처벌 가능한 기준

(위 항목을 포함하여) 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15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음주 및 흡연, 환각제 등을 사용한 학생 /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등**

※ **특별이수교육:**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이수과정, 교육감이 위탁계약기관(금연학교, 마약, 약물, 알콜중독 치료기관)에 보내어 교육을 이수하게 함.

1-3. 봉사활동에서 사회봉사까지 처벌 가능한 기준

(위 항목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수칙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학생 / 수업준비, 청소, 주변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고사 중 부정행위(강제로 보여 달라고 폭력, 위협, 협박한 경우) / 무단 가출,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무단 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부당하게 금품을 거출한 학생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금품을 강탈한 학생 등**

※ **사회봉사:** 행정기관에 위탁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 위탁(우편물 분류, 도서업무 분류, 지하철 안내 등),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봉사 등)

1-4. 학교 내 봉사기준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3회) /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3회) / 언행이 불손한 학생(3회)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월장을 하거나 무단 외출을 한 학생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금지된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교사 중 부정행위(개인적, 계획적, 상호자발적 부정행위)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 도박을 한 학생 / 불량(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불량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등

※학교내의 봉사: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교재, 교구정비,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대안

학생선도규정은 학생징계규정이다. 이는 학생의 학교생활 중 사회의 법과 같은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그 궁극적 목적은 교육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징계과정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과 깨우침의 교육적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학생선도규정에 있는 징계를 적용할 때 징계의 과정과 징계 기간에 따른 프로그램이 확보 운영되어야 한다.

1단계: 선도규정 위반 사유 발생→ 사실 확인(담임/학생부), 학생진술서→ 징계담당교사 사실 확인 및 선도규정 적용 여부 판단→자료 작성(학생진술서, 담임 의견서, 학생부 조사경위서, 학부모 참여안내통지서 발송)→사안에 따른 징계위원회 소집(학부모에게 발언 기회 부여, 사안에 따라 학생 의견 청취)→ 학부모에게 징계 결과 발송

※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비인권적 행위(미리 예단하여 '꿇어앉혀 글쓰기' 감정 섞인 조사, 모욕적 언어 사용 등)를 경계해야 함.

2단계: 징계기간 중 학생을 매일 꿇어 반성문 쓰고 오후는 후미진 곳 청소만 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학생에게 징계 결과를 설명하고 상담(상담부 협조)한다.→ 교내봉사일 경우 학생의 자존심을 고려한(환경부의 협조)봉사활동에 참여케 한다.→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고 독후쓰기, 감상, 대화를 한다.→ 담임, 상담교사, 교감, 교장에게 상담을 받게 한다.→ 학부모에게 징계 마침 통보

※사회봉사 기관 선택: 징계사유 발생 때마다 여러 기관을 바꿀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상담 전 문가, 봉사활동 등 담당자와 프로그램이 마련된 곳이어야 한다.

징계의 과정과 적용은 잘못을 떠나 학생 개인으로 볼 때 잘못을 가리고 인정하고 징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성과 깨달음, 교훈을 얻게 하는 인성교육의 산 채형이다.

규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개인의 불규칙한 일탈 행동을 문제시하는 것과 규율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이다. 즉 규율이 가진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에 반대하는 것이지 규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사들의 행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규율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기 위해서는 '정당' 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징계를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고 스스로가 도덕적 주체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극대화에 복무할 수 있는 '정당한 법'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는 것이어야 한다.(인권사랑) 그래서 학생부 교사에게 더더욱 학생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인권의 가치와 사랑이 필요하다.

2. 학생선도 규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1) 학생징계 때 학생, 학부모의 진술기회 제공여부 (이하 *는 학생선도규정 인용)

※ 대부분의 학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사안에 따라 교감(위원장) 학생생활부장(전부 혹은 몇몇 부서 부장 등), 학년부장(해당학년), 담임교사(해당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중징계(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담당 사안일 경우 전교직원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X	○	○	○	○	○	○	X	○	○	X	○	X	○	○

창원	ⓐ	ⓑ	ⓒ	ⓓ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8조 (학생의 징계)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의 전에 위원회가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사전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은 크게 다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징계 사유 통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사전에 징계 사유가 통지되어 소명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의견 제시는 일종의 참고인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사안설명과 당사자에 의한 진술을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인권사랑)

(2) 학교장 또는 선생님의 재심 요구 가능여부

※징계 결과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재심 요구권은 찾을 수 없었음.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X	○	○	○	X	○	X	○	○	X	X	○	○	○	○	○

창원	ⓐ	ⓑ	ⓒ	ⓓ	ⓔ	ⓕ	ⓖ	ⓗ	ⓓ
	○	X	X	-	X	○	X	X	○
	ⓙ	ⓚ	ⓛ	ⓜ	ⓝ	ⓞ	ⓟ	ⓠ	ⓡ
	○	X	X	X	○	X	○	○	○

교육적 필요에 의해 징계를 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재심 및 이의신청의 절차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 요구권이 당사자에게는 없고 학교장에게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권자가 부당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는지, 징계권자가 합당한 징계사유로 적법절차를 거쳐 타당성 있는 징계를 내렸는지 다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 필요한 것이 재심요구권이다. 즉, 징계구제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인권사랑)

(3) ‘교권모독’, ‘명예훼손’, ‘학교명예 실추’, ‘학교장 허락 없이 모임, 대회행사 참가’ 등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교사를 모독한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장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간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마련된 것이다. **학교명예실추, 명예훼손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으며**, 이 밖에도 각 학교 **선도규정조항에**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문제의 소지가 있음)’, ‘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등 **구체적인 조항 등이 있다.**

현실은 학교에 직접 공문이 오지 않는 **합법적 단체에서 개최하는 대외 행사**가 너무나 많고, 대부분 방학 중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어난 사소한 잘못은 개인이 주최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 되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모임을 갖는 것 또한 **종교활동, 사회에 공인된 청소년 모임 등까지 학교장이 허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사의 모독 행위’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조항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주관적이다. 교사도 교육 중에 학생에게 잘못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사과 없이 나타난 학생의 반발과 거부할 수 있는 행위를 참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조항은 **교사의 교육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불응하거나 모독한 학생으로 바뀌어야 한다.**

(4) ‘불미스런 행동’,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함’ 등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	○

불미스런 행동(대부분 선도규정에 있음)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징계기준 대부분 학교 밖 적용으로 보인다. 이 또한 학교의 명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것은 위 (3)항의 첫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선동과 질서문란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지극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일어난 결과보다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책임의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선도위원회 구성원과 관련된 사안은 그 구성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학교에 일어난 학내분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가입, 참석’ 등

-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X	X	○	○	○	X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X	○	○

국가보안법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

사상,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지배적이며, 다른 행위들과 비교할 때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학생들의 시민,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시각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인권사랑) **불량서클의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봉사활동-특별이수교육까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지나치다.** 다음(6)도 마찬가지로 **사법적 처벌에 해당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셋, 1-1. 퇴학처분까지 가능: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6) ‘반국가적 언동’,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자’ 등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X	○	○	X	X	○	○	X	X	X	○	○	○	X	○

창원	ⓐ	ⓑ	ⓒ	ⓓ	ⓔ	ⓕ	ⓖ	ⓗ	ⓓ
	○	X	○	-	○	○	X	X	○
	ⓙ	ⓚ	ⓛ	ⓜ	ⓝ	ⓞ	ⓟ	ⓠ	ⓡ
	○	○	○	○	X	○	○	○	X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4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반국가적, 반사회적 등은 규제하고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 학생들이 규정 적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범 자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위 (5), (6)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 여러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불온서적, 문서(금서)등을 해당 교사가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위법성을 알고 행한 것인가? 학교징계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학교장)는 불고지죄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학생은 이중처벌을 받으며, 결국 스승이 제자를 고발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보안법 찬반 논쟁을 떠나 국가보안법을 인용한 학생선도규정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적용될 경우 비교육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7) ‘예의가 바르지 못함’, ‘용의가 단정하지 못함’ 등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몇 회)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몇 회)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X	○	X	X	○	X	X	X	○	X	X	X	X	○	X	X

창원	ⓐ	ⓑ	ⓒ	ⓓ	ⓔ	ⓕ	ⓖ	ⓗ	ⓓ
	X	X	X	-	X	○	○	X	X
	ⓙ	ⓚ	ⓛ	ⓜ	ⓝ	ⓞ	ⓟ	ⓠ	ⓡ
	X	X	X	X	X	X	X	X	X

위 조항은 교육 중 언제든지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며, **도덕적 규범이자 학교가 정한 복장 규정이다.** 훈화, 지도, 상담을 통한 학생의 자기반성과 깨달음을 위해 **힘들지만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징계사유로 부적합하다.**

(8) '외부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 '정치성을 띤 활동' 등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X	○	X	○	○	○	X	X	○	X	X	○	X	○	○	X

창원	ⓐ	ⓑ	ⓒ	ⓓ	ⓔ	ⓕ	ⓖ	ⓗ	ⓓ
	X	X	X	-	X	○	○	X	X
	ⓙ	ⓚ	ⓛ	ⓜ	ⓝ	ⓞ	ⓟ	ⓠ	ⓡ
	X	X	X	X	X	X	○	X	X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 되어 학교 교육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마땅히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치성을 띤 활동조항은 과거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하며**, 현재는 입시교육 속에서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도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은 정치 활동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준(예비)사회인의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활동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 또한 최근 입법제정된 만 19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주어질 정치적 권리와도 맞지 않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는 '나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은 학생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우선 이 조항은 참정권과 시민?정치적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칙의 제한은 '정당활동 제한'으로 충분하며, 교칙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해 학생의 정당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교칙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와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혹여 학교 당국이 선택하는 사상의 단체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이 가는 규정이다.(인권사랑)

(9) '학력 열등' 또는 '정신 이상'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 학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학생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X	○	○	X	X	X	X	X	○	X	X	○	X	○	X	X

창원	ⓐ	ⓑ	ⓒ	ⓓ	ⓔ	ⓕ	ⓖ	ⓗ	ⓓ
	X	○	X	-	X	○	○	○	X
	ⓙ	ⓚ	ⓛ	ⓜ	ⓝ	ⓞ	ⓟ	ⓠ	ⓡ
	X	X	X	X	X	X	○	X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0호 교육인적자원부] 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교육인적자원부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력 열등(학습부진아) 조항은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학교가 있다. 그리고 정

신이상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10) 가중처벌

-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 *제 ○ 조 각 항의 1을 재차 위반하거나 그 지도에 불응한 학생
- *징계 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를 회피하였다고 인정될 시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가중 처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징계유예 기간을 징계 수위에 따라 2, 4, 6개월, 1년으로 한 학교도 있음
- *징계중인 학생이 교칙을 재차 위반하였을 시 위반사항에 대한 무거운 징계의 차 상위에 해당하는 징계에 처한다.(●)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X	○

창원	ⓐ	ⓑ	ⓒ	ⓓ	ⓔ	ⓕ	ⓖ	ⓗ	ⓓ
	-	○	○	X	○	○	○	○	○
	ⓙ	ⓚ	ⓛ	ⓜ	ⓝ	ⓞ	ⓟ	ⓠ	ⓡ
	○	○	○	○	○	○	X	○	○

가중처벌의 기준은 조금씩 달리하나 문제는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 재차 위반하거나 그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게는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징계 때 과정을 참작하여 교육적 바탕 위에 징계를 내리고 징계과정을 수행하면 끝났다는 통보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르면 징계에 따른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년(이것 또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동안 징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집행유예의 성질)이다. 동일 학년에 특별교육이수 2번 이면 퇴학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며, 상황에 따라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11) 결과처리 (학생징계처리부에 기록 보관한다○, 결과처리 기록보관의 용어가 없음)

- *학생의 징계사실을 상벌대장(징계)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 *학생부장은 학생선도 회의록 및 징계대장을 해당자 졸업 시까지 기록 보관한다.(전체 중 1학교)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X	X	X	○	○	○	X	X	○

창원	ⓐ	ⓑ	ⓒ	ⓓ	ⓔ	ⓕ	ⓖ	ⓗ	ⓓ
	-	○	○	X	○	○	○	○	X
	ⓙ	ⓚ	ⓛ	ⓜ	ⓝ	ⓞ	ⓟ	ⓠ	ⓡ
	○	○	○	○	○	○	X	X	○

‘학생의 징계 사실을 상벌(징계)대장에 보관한다.’ 는 결과처리 조항이 들어있는 학교와 관계없이 확인된 모든 학교가 징계사실을 누가기록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교 역사가 10여년 된 학교는 처음 부터(1989, 1997 등), 오래된 학교는 징계대장이 이관되고 새로이 기록되고(1985, 1992, 1999 등)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선도규정(1997)으로 바뀌면서 학생의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도 등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각 학교 학생부 캐비닛 속에는 재학 시절 성장기의 과정에 있었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빛바랜 종이 위에 칸칸이 변색해 가는 서너 개의 불도장과 볼펜잉크를 붙들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대표적 표본이다. 징계대장 내용은 해당졸업자의 졸업과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자료의 목적으로 기록보관이 필요하면 해당 년도별 징계횟수 및 유형만 기록하면 될 것이다.

넷.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교육인적자원부]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은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0호 교육인적자원부]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회 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의 꽃이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산 교육장이다. 그러나 학도호국단이었던 학생회는 80년대 들어서 대학은 스스로 학생자치활동(1983)을 시작했으나, 고등학교 전교학생회는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치조직으로 규정하여 그 지위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학생회 임원선발 기준을 보면 충격적인 곳도 있다. 또한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 등을 할 수 없다. 월 1회 정도 정기적 학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 학교는 그나마 앞서가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

현실은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은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 기록된다.

학교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전교학생회 안건들을 보면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 및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등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성적이란 잣대로 피선거권을 주지 않고 그 해에 해당하는 과오에 대한 징계를 받고도 결과에 대한 불이익을 1년 동안 이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생 자치를 말하면서도 회의 개최건과 의안상정권도 없으며, 회의 중 토론과정에서조차 학생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당자가 참여해서 참고발언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한다. 나아가 학생회에서 결의된 건의사항을 두고 학교장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거나 건의에 대한 회신, 답변이 공식적(홈페이지를 이용)으로 있는 학교는 앞서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학급회의 주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연간 계획서에 따라 친절히 월별 주제(새 학년의 각오, 삼일 정신, 호국정신, 스승의 은혜, 흡연의 폐해, 학교 폭력 예방, 고운말 쓰기, 깨끗한 학교환경 등)가 제시되는 곳도 있다.

(1) 학생대표 출마 조건-성적, 품행 단정, 징계 없음, 담임추천 등 2~3개 해당 학교

※조항 있음(O), 조항 없음(×), 미확인(-)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상위 40혹은 50% 이내, 前학기 성적2/3 이상, ‘우’ 이상인 자. 양, 가(50% 이내)가 없는 자, 前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담임교사의 추천서(위 두,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때)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적순, 연장자 순서대로 결정하고, 여기에서도 같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학생 대표는 다수의 학생이 꿈도 못 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선택받은 학생이 누리는 특권으로서의 학생 대표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할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능력' 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성적 우수' 가 대표로서 발휘해야 하는 다른 자질의 뛰어남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자질 중에서 성적만을 유의미한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인권사랑)

조건을 갖추고 출마하여 선거과정에서 규정에 적합한 활동으로 당선되어도 학교장의 승인(허락)이 있어야 한다. **몇몇 학교는 개표 결과 당선 동점자일 때 성적 상위자를 우선하기도 했다. 성적우수의 조건이 출마자격에서부터 동점자 순위를 가리는 사례를 보면 우리 교육이 무엇만을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끄러운 사례다.**

'교사추천' 을 출마조건으로 명시한 경우는 내용상 직선제로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투표는 그것이 직접선거라 할지라도 교사가 이미 선택한 학생에 대해 외피를 씌우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인권사랑)

'징계' 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 의 5단계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의가 바르지 못한 경우 또는 언행이 불손한 경우 많은 학교에서는 훈계 혹은 교내봉사의 징계를 내린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사의 훈계 한번 받지 않은 학생은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제한을 한다' 는 규정은 그야말로 티끌만한 오점도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지켜질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징계사실에 따른 출마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출마를 제한한다' 는 방식으로 징계의 수위를 명확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인권사랑)

또한 한번의 징계가 어느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령 1학년 때 징계 받은 사실이 있으면 3학년 때까지도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한번 징계는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인지가 교칙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징계 받은 사실로 인해 그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에 계속적인 제약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면 규정이 필요하다.(인권사랑)

인문고에서 학생 회장이 공부하지 않고 노는(문제)학생이 당선되면 학교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제된 부분이다. 그러나 학생자치활동으로 인해 학교가 엉망(공부하지 않는 곳)이 된다면 학생을 교육하는 교직원들은 뭘은 무엇인가로 귀결될 수 있다. **학생들은 내가 직접 선택한 학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스스로 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행 단정' 의 경우 어른들의 가치기준이 반영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학생에게는 품행단정이 대표선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조건일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대표를 선출할 때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출기준을 '품행 단정' 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불필요한 학생회 대표의 출마조건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학생회로 이관해야 하며 지도위원회는 '자문기구 또는 지도에 응할 수 있다' 로 바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당수 학생회 회칙에서 두고 있는 학생 대표 출마 조건은 불필요한 요소들으로써 징계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해당 본교 재학생' 이란 규정이면 충분할 것이다.

(2) 학생회 효력정지-국가 비상사태 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X	-	X	-	○	○	○	○	X

‘전쟁’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학교의 문이 닫히고 모이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역사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조항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제기 없이 유지되어 왔다. 결국 이 조항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며 굳이 현행 학생회 회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의도가 의심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사랑)

(3) 금지사항- 정치활동 금지 / 학교운영에 간여

-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마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	○	-	○	○	×	×	○	×	○	-	x	○	○	○	-

창원	Ⓐ	Ⓑ	Ⓒ	Ⓓ	Ⓔ	Ⓕ	Ⓖ	Ⓗ	Ⓘ
	○	○	○	○	○	○	○	○	○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	-	X	-	○	-	○	○	○

우선 이 조항은 참정권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말 큰사전(어문각)에서는 정치활동을 ‘정치에 관계하는 모든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는 그런 행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참정권이 없는 학생이라고 해서 사회 참여의 권리를 제약받을 수는 없으며, **교육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사회 참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인권사랑)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관여불가’ 규정은 대폭 바뀌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이므로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당연히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관여의 방법과 수위가 학교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되는 것이지,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단독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협의해서 관여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학생회 대표들이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도 관여다. 따라서 무조건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학생이 배제돼 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에서 교육기본법에 준헌법적인 효력을 부여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인권사랑)

(4)기타 규정

- *제 (○)조 (부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총무부, 선도부, 학예부, 환경부, 체육부, 홍보부, 정보부 등)

새 학년이 시작되고 학급이 편성되면 담임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학급HR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하부조직은 학생회 상부조직과 서류상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연계되는 조직은 학생부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선도부장, 교내체육대회 때 잠깐 활동할 체육부장 등이 대부분이다. 인문고에서 수십 년 틀에 박힌 조직도를 해마다 만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직을 갖도록 학생자치 활동에 맡겨 해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 (○)조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사전 사후 지도한다.)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등

어떤 조직이 그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능과 권한이 있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③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인준과 불신임, ⑤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소집 등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지 ‘승인’ 또는 ‘재가’ 에 얽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의 방향일 수는 없다.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는 규정이 바람직할 것이다.(인권사랑)

다섯.

1. 학생 체벌규정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① 및 동 시행령 제 31조의 ⑦교육부 중등81140-78 및 중등 81140-181(99.2.26)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및 동 시행령 제 31조의 ⑦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의 제 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체벌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고, 나아가 잘못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교육적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체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체벌을 할 때에는 회초리의 기준(길이 50센티 이내, 지름 2센티 이내)을 설정하고 청소도구나 학습도구류 등을 사용하지 말 것,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체벌 부위(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등)를 비교적 신체의 안전한 부위로 택하고 있으며, 직접체벌은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교장실, 교무실 등)에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체벌의 종류는 직접체벌(1-5대 정도)과 간접체벌(운동장 돌기, 손들고 서 있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지정구역 청소하기 등)이 있다.

(1) 현실

한국갤럽의 체벌관련 여론조사(2002. 6)에 나타난 결과 대다수 성인들은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83.6%)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체벌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교사의 자율(77.4%)에 맡겨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그리고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매우 효과(24.2%), 어느 정도 효과(57.8%), 효과 없다(18%)에 머물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

(2) 문제점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몇몇 학교(별정 규정)를 제외하고 체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현실은 올해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조사에서 70% 정도가 체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체벌규정을 두고 체벌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서당의 훈육방법으로 이어진 체벌은 일제 군국주의 교육, 군사독재정권 속에 어른들에게 그대로 체득되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거듭한 오늘날에는 거대학교, 과밀학급을 움직여야 하는 교사에게는 편리한 현장 교육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체벌의 허용을 주장하는 현장 교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와 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왜곡되고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뒷받침 하듯 체벌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교사의 훈화와 조언, 꾸지람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체벌 해당 학생 행위에 대한 체벌 적용이 지도교사들의 자의적(교육적) 판단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하는 까닭이 된다. 반대로 학생선도규정 중 징계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적용의 일관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체벌 규정을 없애거나, 체벌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벌점제를 적용받기보다는 한두 대 맞기를 원한다. 학교생활 중 체벌규정에 해당되는 자신의 잘못이 기록될 만큼 큰 잘못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까닭을 물어보면 '자신의 잘못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기재에 참고자료로 활용됨). 훈화, 꾸지람(잔소리로 인식하기도)보다 맞는 것이 빠르고 뒤 끝이 시원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등이 우리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 교육 현장의 열악함을 제쳐두고라도 체벌은 학생, 교사 서로에게 편리함, 수월성을 가지며 비교육적(또 하나의 폭력에 길들여지는) 행위라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 벌점제 또한 비교육적이라는 체벌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기록되고 누가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순간순간 일어난 일탈의 행위를 성장과정으로 보아야지 누가적산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비교육적 행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거대 학교, 과밀 학급 속에서 교사의 눈에 뵈 학생만이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3) 대안

우리 모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거대 학교, 과밀 학급 해소)의 일차 선결과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체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체벌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체득되거나, 가치 기준이 채 서지도 않은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교육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왔다.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이 체벌과 함께한 학창시절 선생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체벌에 길들여져 말로서는 안 된다는 판단,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교육이 과거 교육방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가치와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의 부재다. 또한 부당하거나 잘못된 체벌 수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겪는 고통은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더 큰 낭패를 부른 사례가 너무나 많다. 체벌과 폭력의 한계는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너무나 주관적이다. 학교폭력을 없애자고 하면서 체벌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어렵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스스로의 틀을 깨는 체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전제한 해결방안은 첫째, 체벌은 비교육적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행할 수 없다.

둘째, 벌점제는 누가기록되어서는 안되며, 학생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기록내용은 1년간 학생이 수행한 종합적 평가 관찰자인 담임의 몫이다.

셋째, 학생생활수칙으로 대신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해서 꼭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수칙이 제정(개정)될 때 공감 속에 권위를 가질 것이다.

체벌규정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비교육적 행위임을 모두가 인정해야 하며, 과밀된 교육현장 여건을 대폭 개선시킴과 동시에 교육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체벌의 현실 불가피성에 빠

지지 않고 교육자 스스로 체벌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섯.

1. 학생생활수칙

※체벌 실시 학교: 진한 글씨체는 체벌강도가 높음

별점 실시 학교: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생활지도일지」에 기록되고, 3회 이상 기록되면 「행동관찰기록부」에 기재되는 동시에 별도의 선도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1) 기본예절

교사의 부름에 도망감 / 수업 중 다른 과목 공부 / 쉬는 시간에 장난이 심함 / 실내 통행 시 발뒤꿈치를 들고 좌측통행한다. / 일과 중 통행은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이용한다. / 실내에서는 목례로 인사한다. / 점심시간 외 취식행위 / 교복착용상태 불량 / 규정외 양말, 신발착용 금지 / 명찰, 배지 미착용 / 책상 위에 앉거나 누워 있는 행위 / 남의 험담, 거짓말, 저.비속어 사용 / 친구와 다투는 행위(폭력행사) / 선생님에게 불손한(예의에 어긋난)행위 / 책가방 없이 등교하는 행위 / 규정.복장 위반 / 규정보다 긴 머리 / 화장 행위 / 수업 중 껌, 과자 등 취식 행위 / 머리 염색 행위 / 머리 퍼머 / 책상.걸상.벽 등 낙서 행위 / 선생님의 정당한 말씀에 불응하는 행위 / 선생님에게 불손한-예의에 어긋난- 언행 /교복 불착용 / 친구와 다투는 행위(폭력 행사), 책걸상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준법

자기 주변 정리정돈 불량 / 복도.실내 소란 행위 / 하급생반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 쓰레기 분류 배출을 하지 않는 행위 / 교실 내외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 실내에서 공기놀이 행위 / 교통신호 위반, 무단횡단 행위 / 침.껌 등을 아무 곳이나 뱉는 행위 / 등교 후 무단외출 행위 / 학생간부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공공 시설물 파손 / 자기 임무를 다른 학생에게 전가하는 행위 / 교문을 통하지 않고 등교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행사에 불참한 학생 등

(3) 수업

자율학습 시간 지각 / 수업 준비 미비(수업에 늦게 참석 등) / 학습과제 불이행 / 수업 분위기 저해 행위 / 수업 교재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 등

(4) 퇴폐

불량서적, 불량 비디오 소지 행위 / 불건한 이성교제 / 도박 행위 / 흡연 및 담배,ライター 소지 / 불량서적, 불량비디오 소지 행위 / 불량서적 탐독 행위 등

(5) 용의복장

①교복 및 겨울용 덧옷

착용 상태 불량 / 명찰, 배지 미착용 / 규정 복장 위반 교복 위에 입는 방한용 덧옷의 색깔(검정색, 짙은 청색, 검은 회색류 규정(원색 계통 특히, 빨강, 노랑 등 형광색 혹은 현란한 색 금지) / 방한용 외투는 등하교 시에만 착용 / 긴 코트의 길이는 교복치마 길이 정도로 한다. / 재킷 모양의 외투는 착용하지 않는다. / 목티(동절기만 착용하며 검정, 곤색, 회색, 흰색 계통만 착용) / 풀바지 착용 금지 / 교복 불착용 / 목도리의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하며 교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지난 여성부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여학교, 남녀공학교에 치마와 바지를 혼용하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함.

② 양말

규정 양말만 착용 (화려한 패션 양말, 레이스 달린 것, 빨강, 노랑, 초록 등 원색 금지)/ 발목양말 금지 또는 허용 / 발목 양말의 경우 복사뼈를 덮는 것이어야 한다. / 동복 착용 때 검은색, 하복 착용 때 흰색으로 규정하기도 함.

③ 신발

학생용 구두만 착용(앞이 뾰족하거나 장식물이 달린 것, 세무, 적색, 노란색, 녹색, 형광색 등 금지) 규정된 운동화(흰색, 검은색, 갈색 등)만 착용 / 대부분 끈이 있는 운동화만 허용

④ 두발

남학생: 규정보다 긴 머리 금지 / 완전 삭발, 퍼머, 염색, 무스, 젤리 등 머리에 이물질 도포행위 금지 / 언밸런스형 금지 / 학생다운 정결한 두발 정리 / 머리를 자주 감고 깨끗이 한다.

여학생: 규정(대부분 5-15cm)보다 긴 머리 금지 / 퍼머, 염색, 무스, 젤리 등 머리에 이물질 도포행위 금지 /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하며,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한다.

⑤ 책가방

보통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실용적인 가방, 학생 신분엔 적합한 색상, 가급적 단색(원색, 형광색 불허) 허용 / 외줄, 긴 끈으로 된 것, 서류가방, 대학생용 가방, 책가방 없이 등교하는 행위 금지

⑥ 손톱, 눈

손톱 불량/ 메니큐어 칠 / 물들이기(봉숭아 꽃잎) / 눈썹을 고치거나, 눈썹손질 금지 / 색깔 있는 안경, 렌즈착용 금지

⑦ 여학생(머리띠, 핀, 스타킹)

머리띠/핀: 검정, 회색, 곤색, 갈색, 베이지색 등을 허용하며, 큐빅이 박히거나,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 5cm이상 큰 것은 제외 / 핀, 머리띠는 반드시 장식이 없고 너비 1cm 이하의 검정색으로 한다.

스타킹: 학생용 검정 및 살색, 커피색, 회색 계통이 대부분 허용됨. / 무늬 있는 것 제외

6. 기타

목걸이, 반지 등 착용 금지 / 악세서리 일체 착용 금지 / 화장(색조) 행위 금지 / 고가의 휴대폰 소지 금지 / 휴대폰 사용 허용(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며, 어길 때는 학교마다 3일, 5일, 7일, 한달, 졸업 때까지 압류 등 다양), 소지만 허용, 소지 일체 금지 / 학용품은 지정품만 가능하며 성인용 또는 자극적인 문구 및 그림이 인쇄된 것은 사용불가능 함

해결방안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한 부분이 두발규정이다. 규제 대상인 머리 모양이 학생의 인격발전이나 학습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물을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거니와 유추하기 어렵다. 짧은 머리가 공부하는데 좋다면서 왜 삭발(부당한 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인식)은 안 되느냐고 질문하기도 한다.

색깔에 대한 규제는 흑백TV 문화 속에 살았던(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 레드콤플렉스, 밝은 원색은 시각적으로 피곤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 화려한 색은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나아가 교사들이 보낸 학창시절(당시 규정에 맞게 생활한 것) 현재 학생들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은 가까운 훗날 선진 세계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경쟁해야 할 주인공들이다. 자의적인 규정은 구성원의 동의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없기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규범으로서의 내용과 절차, 합리성을 갖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개성 표현도 보장받지 못하는 속에서 강요받는 단정함이 과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의 몸(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용의, 복장규정, 단체 생활에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도덕적, 사회적 지탄이 되는 행동에 대한 규정 등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일곱.

또 다른 문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발표(2004. 8. 6)하고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지침을 내렸다. 목적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으나, 학생인권과 교육의 입장에서 본 이 법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반복, 심화되고 있는 학교내외 폭력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점 또한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인 학교장이 모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학생선도위원회보다 징계의 판단에 교육적인 면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단위 학교(2003년 전국 중,고교 수: 4,881개교)에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 발생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되기는 어렵다. 결국 형식만 두고 지금까지의 학생선도위원회의 기능만 없애버린 채 학교장, 학생부장, 징계담당교사로 축소된 형식으로 진행되기 쉽다.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지도할 수 있는 담임의 참여(대부분의 학생선도위원회에는 담임의 입장을 존중함)를 배제함으로써 교육적인 지도보다 처벌 중심임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 중·고등학교는 해당지역 경찰서 형사관리계 또는 형사행정지원반, 초등학교는 생활안전과와 협의하여 경찰관을 위촉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 중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 가해학생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마.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법 제12조)

-법률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현재(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 고발로 이어질 경우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조정외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외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외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학생의 신분에서 일어난 사안 중 ‘폭력’에 대한 심각성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법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둘째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셋째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징계의 절반 이상이 폭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언어, 왕따 등도 폭력에 포함시킨 부분은 진전된 인권의식과 폭력 예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해당 사건까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회의 소집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법률이 사문화되거나 편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일급)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연구는 교육주체 모두가 참여해야 할 다음과제외로 남긴다.

마치면서

학생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늦었지만 이 문제가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결국 이제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삶의 질(가치)을 추구하고 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은 필연적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학생생활지도에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관심 있게 읽어 본 교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 교원연수원에서 예비교사에게 학생생활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해 본 적이 있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듯 인권에 바탕 한 가치교육(인간이 지닌 지, 정, 의를 구성하고 있는 마음의 바탕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촌 시대의 우리 학생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고 보편타당한 가치 위에 지식을 쌓고 창의성을 빛내야 하는 절실한 시점에 있다. 중견 교사 입장에서 보면 학창시절 ‘인권’이란 단어조차 낯선 것이었다. 인권 없이 교육 받은 사람에게 인권을 말하면 사치스럽거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 학생들은 인권이 싹트는 세상을 만났고 이런 가르침 속에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출발역은 학교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환경과 입시제도만 탓하는 것은 훗날 제자들에게 스스로 인권(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반전, 평화교육도 인권교육의 범주 안에 있음)도 몰랐던 부끄러운 교사로 살아갈 것이다.

첫째, **성적 지상주의로부터 살피워진 지식교육만을 중시한 입시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시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보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야하는 교육목표를 빼앗아버렸다. 지식 중심의 입시제도가 자리한 이상 공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 간 지역간 격차를 벌리며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모든 교육 철학과 가치와 이론이 사라지는 블랙홀인 **교과 성적 중심의 입시제도를 지양하고 다양한 재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전인교육의 틀인 가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물질적, 경제적 풍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치원 때 말 잘 듣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왜 커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벌써 나와 있다. 자연은 공평하여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한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가치교육의 중요성을 판단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식의 머리만 키운 사회구성원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 어른들이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좀해보면 도시의 학교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대학진학이란 하나의 목표 앞에 서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거대학교, 과밀학급 속에 탁아소 같은 종일반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은 끊임없이 집단적, 획일적 사고를 하게 한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만 있고 그 내면은 입시교육의 현장이다. 이런 절대절명의 현실에서 인권은 숨쉴 틈이 없다. 학교장 1인의 책임 속에 거대과밀학급을 빈틈없이 운영하거나 지식암기 중심에 맞는 주입식 교육을 위해서 그러하다. 상하수직의 관계와 입시교육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학교와 학생은 서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어렵지 않다. **거대.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며, 입시교육과 궤를 같이 하는 권위주의 관료 행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넷째, **경상남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2. 9. 9 ‘학생생활규정 권고문’ 속에 있는 조항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주체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학생선도규정 및 여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정신의 바탕 위에 현장에 맞는 학교 규정과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기준이 잘 적용되는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교육자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도 교과 활동과 연계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피교육자다. 그리고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다. 학생들에게 입시교육에 묻혀 생활지도의 수월성을 내세운 나머지 진정한 가치교육인 인권을 등한시 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가치한 비인권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학교에 눈감고 있는 공범자와 다를 바를 바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거리낌없이 입학식 때마다 -성적 최우수자를 부러워하며, 그의 선창 아래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본 적도 읽은 적도 없는 중요한 학교법을-오른 손바닥 정면 높이 들어 외치지 않았는가. 세상은 공평, 냉정하여 우리가 이기적으로 추구했던 학벌사회를 위한 입시교육은 반대로는 사회계층간 불신을 증폭시키고 최고 소수를 위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내 자녀만을 위해 애써 눈감았던 인권과 애써 추구했던 입시문화가 오히려 보편적 삶의 가치를 희생시켜왔으며, 나 자신도 피해자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새삼 인권, 가치교육이 무엇이나고 묻겠지만 학부모의 눈물은 말한다.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약하면 얼마나 약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덧붙임

1.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1.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학교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함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중·고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II 학교생활규정(안) 구체적 조항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예시안>

-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 학생들이 21세기 주역으로서 학교·지역사회·국가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2)

<평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예시안은 어린아·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줌.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지도협의회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직원으로 구성(§42)
- 생활지도협의회는 직원조회 시 병행(§7)
- 구성은 교감, 생활지도부장...해당 학년부장(학부모대표:학교선택사항)으로 함(§8)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한 정과 동 예시안 제2조(목적)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가정·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3. 폭력예방 수립계획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 별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심의 후 실행(§9)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치료·가해학생의 치료기관 지정

<평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의 의무로써 아동에 대한 폭행·폭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임.
- 따라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당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바람.

4. 여가활동

<예시안>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함(§18의1)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 준수(§18의 2)
- 특별실 담당학생 두어 관리 및 청소(§18의3)
- 생활지도위원 등은 교내 비행발생 지역 수시순찰(§18의4)
- 타인의 휴식 방해하는 소란 활동 자제(§18의5)

<평가>

-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발달시키며,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임.
- 법적 근거로는 헌법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하여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과 관련된 조항을 학교생활규정에 담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의 현상이 되길 바람.
- 여가활동과 관련, 학교 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5. 교내생활규정 중 용의사항

<예시안>

- 가방은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19①5)
- 무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19①8)

<평가>

- '학생신분에 맞는' 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정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 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 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벌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6. 교외생활규정 중 보호자의 의무

<예시안>

- 학생의 올바른 교외생활 지도, 심각한 이상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중·고등예시안§31)
- 학부모·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비행 방지를 선도(초등예시안§45)

<평가>

- 학생을 잠재적 문제아 또는 비행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임. 따라서 '비행방지를 선도' 라는 규정보다는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 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초등학교예시안의 보호자 책임

<예시안>

- 학생의 교·내외생활로 타인이나 학교에 손해발생 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 및 도의적 사죄(§49)

<평가>

- 동 규정은 민법 제755조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임.
- 특히 법과 각종 규정은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 학생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규정함이 바람직함.

8. 정보통신

<예시안>

-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건전정보 제공, 음란·폭력물 접속 금지, 타인 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존중,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 등(§31)
-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내 첨단기자재 관리 철저(§32)

<평가>

-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중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필요한 규정이지만, 학생에게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9. 학생회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35)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38)

<평가>

-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금지활동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가입금지, 정치에 관한 활동 금지(§35)

<평가>

-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여 동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11. 효력정지

<예시안>

- 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37)

<평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12. 학생체벌

<예시안>

-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 금지, 체벌기준에 따라야 함
- 교사는 체벌 시 학생에게 사유 인지시켜야 함
- 체벌은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 체벌 전 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점검의무, 이상 있을 때 연기가능
- 체벌 도구는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나무, 직선형
-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
-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해당 학생에 상해 금지
- 해당 학생은 대체벌 요구 가능, 해당 교사는 학교장 허가 얻어 보호자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 협의(§54)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법률상 체벌권한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
-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함.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훈계 등을 예를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함.
-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함.
-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교육법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법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13. 현장실습 준수사항

<예시안>

-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규정. (실업고예시안 §30)

<평가>

- 위 규정은 기업체와의 계약서 등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며, 학교생활규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학생에게 현장실습 중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및 학교당국에게 현장실습대상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분석을 할 것과 실습 중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안)이 중·고등학교생활규정(안)과 내용이 같고, 다만 위 조항만 달리 규정한 것은 실업교육이 주변부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키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증임. 실업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알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실업고 학생들은 고학력사회 노동경시의 풍조 속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으며, 학교를 통해 생존·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직업교육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은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면서 성장·발달해야 함.
- 특히 실업고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실업고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동기를 일깨우고, 희망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

14. 징계의 방법

<예시안>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함. (§82)

<평가>

- 징계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 봉사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15. 개정방법

<예시안>

-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사항(§48)
- 회칙제정 및 개정, 조직 및 편성, 예산·결산·감사,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 또는 집행위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거쳐 대의위원회에 회부(§49)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교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 수 교원 찬성으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92)

<평가>

-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학생회 관련 규정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는 등 비체계적임.
- 생활지도협의회는 지도기관이 되어 일상적인 지도·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회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III. 교육부 예시안의 평가기준

○ 유엔아동권리협약

가. 내용

- (1)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됨.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 (2) 제1부(제1조 내지 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체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평가원칙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①아동최선이익, ②생존·발달, ③차별금지, ④아동의견존중 원칙 및 각 권리보장 여부

- (1)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이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 이는 주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또는 국가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최선의 이익이 불확정개념이기는 하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2) 동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지며, 당사국은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것을 규정. 이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임.
- (3) 동 협약 제2조에서 국가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함.
- (4) 동 협약 제12조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 이는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자신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임.

○ 헌법의 어린이·청소년 권리관련 조항 및 기타 어린이·청소년관련법

2002. 9. 9

2.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정책권고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권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통보 요약문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2002년 9월 9일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생활규정은 예시안이라는 하나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이 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안」 또는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체벌 허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체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 과정을 두어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당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한 실업고 예시안에 대해서도 “물적 손해에 대한 학생의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에게 철저한 정보수집과 학생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 19일 학교 내 체벌금지 등 우리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 “교육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